

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·범위 및 면적(제29조제1항 관련)

1. 시설의 종류

시 설 종 류	내 용
가. 수련시설	법 제10조제1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 이상
나. 체육시설	실내체육시설 1개소 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 이상
다. 문화시설	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
라. 자연탐구시설 또는 환경학습시설	자연학습원, 환경학습장, 동·식물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
마. 모험활동시설	수상·해양·항공 또는 산악 훈련장, 극기훈련장, 모험활동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험활동 시설 중 1개소 이상
바. 녹 지	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

2. 범위 및 면적

가. 제1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은 해당 수련지구 내 전체 시설면적 중 도로·광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투자비는 해당 수련지구의 조성에 드는 전체 투자비 중 도로·광장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투자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